

보도자료

2010년 3월 30일(화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(☎750-2630)
시장조사과 안영훈 사무관(☎750-2644)

방통위, KT의 전용회선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

- 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'10. 3. 30일 (화) 전체회의를 개최하여, KT가 IDC이용자인 엔에이치엔(주)(이하 'NHN')에게 전용회선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여 회선의 제공을 지연하거나,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(NHN)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데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,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.

※ IDC(집적정보통신시설, Internet Data Center) : 기업 및 개인고객에 통신설비(인터넷 접속 회선 등), 전산설비(서버 등 컴퓨터설비), 기반시설(전원, 항습기 등)을 임대하거나,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
<< 조사 결과 >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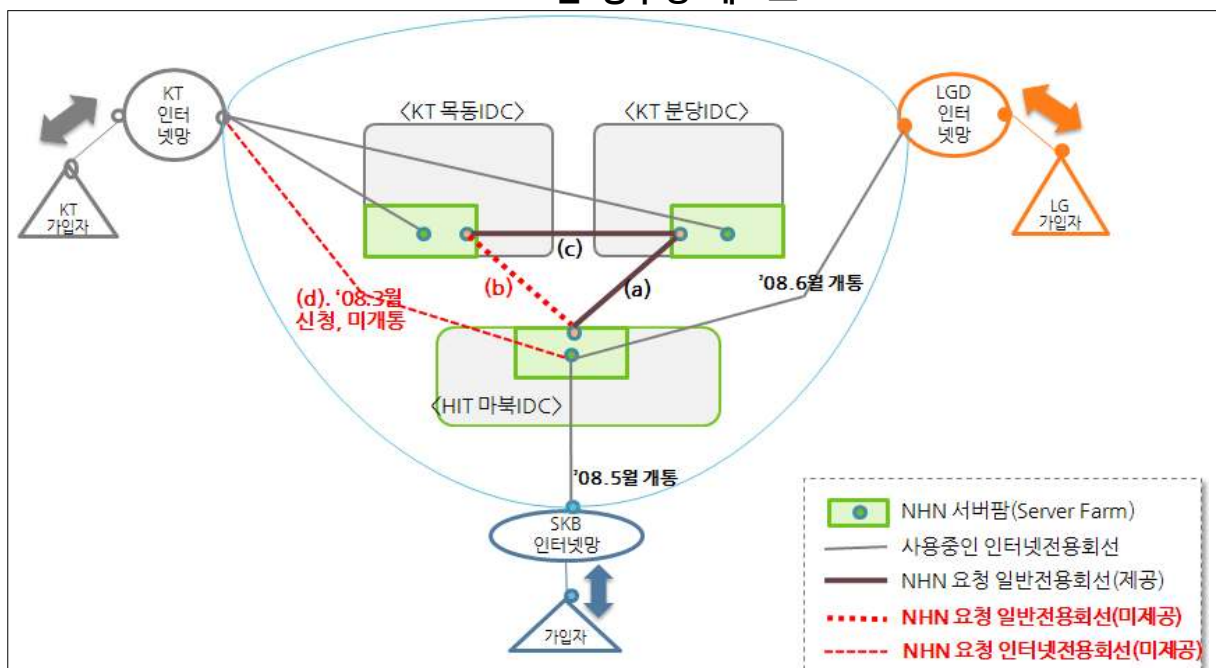
- 방송통신위원회는 IDC사업과 전용회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KT가 자사 IDC와 他사업자 IDC를 동시에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전용회선 제공을 지연·거부한 행위를 인지하여 '08. 12월에 조사에 착수하였다.

- 조사 결과, KT는 기존에 자사의 IDC 2개소(목동, 분당)를 이용하고 있던 NHN이 현대정보기술 마북IDC에 추가 입주하면서 요청한 3개 IDC 간 일반전용회선 제공요청과 KT 인터넷망 ~ 현대정보기술 마북IDC 간 BGP* 방식 인터넷전용회선 제공요청에 대해

* BGP(Border Gateway Protocol) : 인터넷상의 개별망간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 방식으로, 일반적인 인터넷회선 이용자는 제공사업자로만 인터넷트래픽 소통이 가능하나, BGP방식 인터넷회선 이용자는 복수의 제공사와 트래픽 소통 경로 조절이 가능

- 일반전용회선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he이용자와는 차별적인 이용조건(전용회선 (a) 구간 모니터링, 마북IDC에서의 he인터넷망 연동 금지)을 제시하고 (a) 구간 이용조건의 미이행을 이유로 일부 회선(b) 구간의 제공을 지연하였고
- 인터넷전용회선[(d)구간]과 관련하여 금융·교육·공공기관 및 제조업체 등 he이용자에게 이미 제공(221회선, '09.8월 기준)하고 있는 BGP 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을 확인하였다.

< KT - NHN 간 망구성 개요도 >



-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상 개통 절차에 차별적인 이용조건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, 전체 일반전용회선 계약 37만여건 중 본 건이 유일하다는 점, BGP방식의 인터넷전용회선을 he이용자에게는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HN에게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,
- KT가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, 이용자의 자유로운 전기통신역무의 선택을 제한하여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.

<< 시정조치 내용 >>

- KT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(금지행위)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[별표3] IV 제5호 및 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
-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(i) 일반전용회선 제공 지연 및 인터넷 전용회선 제공 거부 등 금지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, (ii) 전용회선(일반인터넷) 제공 시 이용자 차별 및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3개월 이내에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하며, (iii) 각각의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토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.

<< 기대 효과 >>

- 이번 조치를 통하여 KT의 전용회선 청약절차, BGP 인터넷전용회선 이용절차 등 관련절차가 개선되고 차별적인 조건부과 및 이용자 선택을 제한하는 유사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며,
-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이용자 이익저해 관련 금지행위 규정(전기통신사업법 §36조의3① 4호 등)

◆ **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①**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~ 3. <생략>

4.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**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**하는 행위

□ 이용자 이익저해 관련 금지행위 유형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§42조① [별표3])

◆ **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[별표 3]**

IV(이용자 이익 저해) 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 중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~ 4. <생략>

5.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가. 전기통신역무의 요금, 번호 및 전기통신설비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

6. <생략>

7. 다른 전기통신역무의 선택 또는 이용의 방해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가.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·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